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선거시행세칙-

제1장 자연과학대학 선거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자주적 학생자치활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정·부회장, 정·부 대의원장, 각 과 정·부 회장, 대의원 선거에 적용한다.

제4조(선거인) 본 세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목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구성)

1. 자연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은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칙」에 의거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자연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자에 한한다.
3. 각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은 해당과의 대의원 및 자연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자로 구성하며, 선거 및 투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위원장) 자연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하며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의장이 맡는다.

제8조(업무 및 권한)

1. 입후보자 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작성
3. 선거 홍보용 유인물 및 벽보작성
4.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의 조정
5. 선거장의 질서 유지 및 감독
6. 각종 선거사고와 이의 신청에 관한 조사 및 심의
7. 각 후보 진영의 정·부 후보자, 참모장, 선거운동원의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
8. 선거 및 당선의 유효여부 및 재선여부와 당선자 결정
9. 선거시행세칙의 개정 및 제정
10.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 업무

제3장 선거 일반

제1절 선거일정

제9조(선거시기) 선거는 임기개시 전년도의 11월 중에 시행한다.

제10조(선거일정) 자연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 선거 공고, 원서교부 및 등록기간, 후보자확정 공고, 선거운동기간, 선거일 등 선거 주요일정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자연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보궐선거나 재선거인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1. 후보자확정 공고: 원서등록 최초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2. 선거운동 기간: 원서등록 최초 마감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 시작하며, 기간은 최소 7일로 선거일을 포함할 수 없다.
3. 선거일: 자연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이 14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2절 후보등록

제11조(공동입후보) 정후보자와 부후보자는 공동 입후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입후보 자격)

1. 징계처분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학칙에 근거한 처벌에 준한다. 단, 징계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즉시 자격이 부활한다.
2. 선관위의 원서 등록 마감일까지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3.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이어야 한다.

제13조(추천인 서명)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인 서명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다.

1.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단, 대의원 의장단: 5개 학과 이상 (각 학과의 추천서는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의 회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입후보 한다.
2. 학과 학생회장단, 대의원: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입후보 한다.

추천인서명은 원서교부 이후부터 가능하며 원서교부 이전의 추천인 서명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추천인은 복수의 후보자에게 추천이 가능하다. 단, 당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의 추천은 불가하다.

제14조(등록서류)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서류를 후보자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후보 등록원서 이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정한 구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1. 입후보 등록원서
2. 자기소개서
3. 후보자 추천인 명단
4. 서약서
5. 재적증명서 각 1부
6. 학생회비 납입증명서 1부
7. 사퇴확인서
8. 선거사무소 등록신청서

- 등록서류는 후보자의 성명, 학과, 등록학년, 사진, 선거운동본부 이름, 선거공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15조(등록심사)

- 등록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격을 심사하고 후보자를 확정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이후 48시간 이내에 회의를 열어 등록서류를 심사한다.
- 등록심사 결과 제출 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주고 서류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통보 24시간 이내에 해당 서류를 보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
 - 제3항에 따른 서류의 보충을 요구하였으나, 통보 24시간 이내에 서류를 보충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때

제16조(후보사퇴) 정후보자 부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17조(등록기간 연장)

- 후보자등록기간 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 유고로 궐위 시에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5일까지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없을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 까지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제재

제18조(징계) 징계란 본 세칙에 징계 사유를 명시한 행위를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행위를 할 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징계의 종류)

- 징계의 종류는 주의, 경고, 자격박탈로 나뉜다.
- 주의가 3회 누적되면 경고 1회로 대체한다.
- 경고가 2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주의를 받을 경우 익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 경고를 받을 경우 익일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단, 기존에 배포된 리플렛 현수막 등은 회수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새로 리플렛을 배포하는 행위 등 인력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선거운동 마지막 날은 적발 시점이후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제20조(주의) 공정한 선거 진행에 있어 제 20조에 비해 경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결정되는 행위에 대한 조치로써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주의 1회 이상으로 규정한다.

- 규정된 선거기간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단,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치된 현수막과 목재게시판은 선거일 전까지 예외로 한다.)
- 유세시간 외에 악기나 음향기기를 사용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지 않은 선거용품을 사용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대중집회를 열거나 참가하는 경우

4. 학교 밖에서 선거운동을 한 경우
5.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선거사무소 등에 승낙 없이 들어가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7. 벽보·선전 선전물의 작성·게시·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는 행위
8. 투표장 내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9. 낙선을 목적으로 연설·통신·벽보·홍보물 등의 방법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단, 허위의 사실은 선거인의 정확한 결정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
10.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이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21조(경고) 공정한 선거 진행에 있어 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결정되는 행위에 대한 조치로써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경고 1회 이상으로 규정한다.

1. 금전·물품·향응·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흉기 기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 개표소, 대의원실 또는 대의원회 산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가는 행위
3. 대중 집회 또는 투표소, 개표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4. 허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행위
5.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6. 선거일 후 답례를 하는 행위

제22조(자격박탈) 피선거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여 후보자로서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로써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자격박탈로 규정한다.

1.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않고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을 열거나 투표함 안의 투표용지를 확인·획득·파괴·훼손·온닉 또는 탈취한 경우
2. 선거관리위원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는 행위
3. 후보자, 선거운동원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는 행위
4. 폭행·협박·체포·감금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투표소, 개표소, 대의원실 또는 대의원회 산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소란, 교란 하거나 투표와 개표에 관한 설비, 선거인 명부, 선거에 관한 서류와 인장 등을 훼손 또는 탈취하는 행위
6.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의 모금 행위

제23조(징계의 의결) 징계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자격박탈은 재적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징계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대상, 징계의 종류 및 이유를 징계 의결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이의제기) 각 선거운동본부는 징계 처분에 대해 통보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6조(징계의 유효기간) 징계 처분은 개표 결과 공고 후 48시간까지 유효하며, 기간 내에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제5장 투표

제27조(선거방법)

1.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원들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등 특수한 투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특수한 투표방법의 시행 여부, 대상, 방식,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적으로 정한다.
3. 투표는 선거권을 가진 자가 직접 하되, 해당 선거에 있어서 1인 1표로 한다.

제28조(투표시간)

1. 투표 시간은 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2. 투표율이 재적회원의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투표시간을 연장한다.
 - 당일 연장투표: 당일 20시 30분까지
 - 익일 연장투표: 익일 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12시 투표율이 과반수에 도달하면 13시에 투표를 종료한다.)

제29조(투표의 제한)

1.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2.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30조(투표절차)

1. 투표진행요원의 본인확인
2. 선거인명부 확인
3. 투표자의 서명
4. 투표진행요원 및 투표참관인의 투표용지 확인
5. 투표용지 배부
6. 기표 및 투표

제31조(본인 확인)

1.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2. 신분증은 학생증(모바일 학생증을 포함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중 일부(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를 학생증을 대신하여 신분증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투표진행요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기표·투표)

1.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2.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최대 두

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두 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33조(투표소에서의 질서 유지)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투표 시작 전 투표함 이송)

1. 각 투표함은 8시 20분까지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투표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투표참관인이 8시 20분 전까지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관리관의 확인 하에 투표함을 설치할 수 있다.
2. 투표함,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참관시간기록표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물품은 투표관리관이 각 투표소로 이송한다.

제35조(투표 종료 후 투표함 이송)

1.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 후 날인하여야 한다.
2. 투표관리관은 투표함의 이송 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받는다.
3.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참관시간기록표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관리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한다.
4. 투표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 운반참관인이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수하며, 투표참관인은 이송 전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제36조(투표함 보관) 각 투표소의 투표함은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장에 보관한다. 단, 개표장이 투표함의 보관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 참모장의 합의로 투표함 보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개표

제37조(투표성립) 선거는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한다.

제38조(개표 시작 시간) 개표시작은 투표 마감 후 3시간 이내로 한다. 단, 부득이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재량으로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39조(개표장) 개표장에는 개표진행요원과 각 선거운동본부가 파견한 개표참관인만이 출입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방송, 신문, 통신의 취재, 보도 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개표소) 개표소는 개표진행요원들이 개표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개표장 내에서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개표절차)

1. 개표선언
2. 각 투표구별 투표함 개봉 및 개표
3.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4. 후보별 득표를 뮤음별로 분류하여 봉투에 봉인
5.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해당 투표소의 각 후보 별 득표 공고 및 현황판에 결과 기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과정을 투표구별로 반복
7. 제27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표를 시행할 때 그 투표의 결과 확인 및 공고
8. 최종 결과 발표

제42조(투표용지의 무효처리)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 두 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은 것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 기표한 것의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한 것 내부가 메워진 것으로서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를 명확한 것
 -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를 명확한 것
3.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투표용지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무효표로도 보지 아니한다.

제7장 재투표 재선거

제43조(재투표, 결선투표)

1.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에는 후보 자격이 있는 모든 후보 조를 후보로 하여 재투표를 시행한다.
2. 최고 득표조가 두 조 이상인 때에는 각 최고 득표를 기록한 모든 조를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3. 1위 득표 조와 득표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은 조가 있을 때에는 1위 득표 조와 해당 조들을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4. 재투표, 결선투표는 개표 종료 후 일주일 안에 시행하며, 투표율에 상관없이 득표수가 많은 조를 당선조로 한다.

제44조(재선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호에 의한 재선거는 재선거 사유를 공고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그럼에도 제 1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익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4.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의 상실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때
5. 기타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제45조(보궐선거)

1. 탄핵 등의 이유로 임기 중 퇴위된 때 잔임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궐선거의 시행 일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 시행 일정을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8장 규칙

제46조(발의) 본 세칙의 개정안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과반수의 발의
2.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발의

제47조(의결) 본 세칙의 개정안은 자연과학대학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8조(선거시행규칙) 선거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선거지침)

1.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선거시행세칙」에 따르거나, 자연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측 정·부 후보, 참모장들 간의 합의사항은 자연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 동의 후 세칙과 동일 효력을 발한다.(단, 합의사항을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공고와 동시에 발효되며, 세부사항 및 자연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결정한 시간부로 즉시 발효, 시행한다.

제 51대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하늘’

2020. 12. 29. 일부개정